

의안
번호

211

성북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성북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3. 11. 21.

전문위원 김 동 성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나. 의안번호 : 제211호

다. 제출일자 : 2023. 11. 07.

라. 회부일자 : 2023. 11. 14.

2. 제안이유

- 어린이가 안전한 공간에서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서울형 키즈카페」 사업과 관련하여 놀이시설 확충을 위해 관내 민간 유휴공간을 발굴·연계하여 조성하는 성북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 시설 2개소에 대하여 위탁운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시설 : 성북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2개소

연번	시설명	소재지(행정동)	시설규모	비고
1	서울형 키즈카페 성북구 성북동점 (하늘이음교회)	성북구 성북로4길 21 (성북동)	· 2층 일부 · 연면적 : 261.05㎡	무상사용기간 : 10년
2	서울형 키즈카페 성북구 정릉3동점 (벤엘교회)	성북구 솔샘로17길 8 (정릉3동)	· 1층 일부 · 연면적 : 213㎡	

나. 위·수탁기간 : 계약일로부터 5년(예정)

다. 위탁사무내용

- 성북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운영
- 어린이와 보호자를 위한 다양한 놀이 및 소통 프로그램 운영
- 보호자 부재 시 긴급 놀이돌봄 서비스 지원

라. 수탁기관 선정 : 서울시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 지침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예정) 제9조에 따라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4. 참고사항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예정)」
-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5. 검토의견

가. 개요

- 본 동의안은 성북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이하“서울형 키즈카페”)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성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나. 주요내용

- ‘서울형 키즈카페’ 성북동점, 정릉3동점이 2024년 5월 이후 개소 예정임에 따라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법인을 대상으로 지정 위탁하려는 것이며, 위탁계약 체결일로 5년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임. 위탁시설 현황 및 운영예산은 다음과 같음.

< 대상시설 현황 >

소재지	규 모	이용인원	운영방식	종사자	비고
성북로4길 21 (성북동)	- 2층 일부 (건물규모 5층) - 연면적 261.05㎡	- 회차당 20명	지정위탁운영 (하늘이음교회)	3명 (시설장, 돌봄1, 안전)	월~토 0900~1800
솔샘로17길 8 (정릉3동)	- 1층 일부 (건물규모 지하2상3층) - 연면적 213㎡	- 회차당 17명	지정위탁운영 (벤엘교회)	3명 (시설장, 돌봄1, 안전)	월~토 0900~1800

< 2024년 성북구 공공형 어린이놀이시설 운영예산 >

구분	예산	인건비			운영비		
		계	시비	구비	계	시비	구비
하늘이음교회	128,323	107,323	76,860	30,463	21,000	17,000	4,000
벤엘교회	128,323	107,323	76,860	30,463	21,000	17,000	4,000
계	256,646	214,646	153,720	60,926	42,000	34,000	8,000

다. 법적근거 및 지정위탁의 적정성

- 「아동복지법」 제53조1)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금번 정례회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2)에 ‘구청장은 실내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9조에 놀이기구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바,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에 관한 사무는 민간위탁 사무로서의 그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음.
- 지정위탁에 관해서는 같은 조례 제9조제1항제2호3)에 놀이기구 설치 시 건물을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법인 또는 개인은 공개경쟁의 방식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한 바 본 놀이기구는 종교법인에서 10년간 무상 사용하게 한 경우이므로 지정위탁 운영은 적절하다 사료 되며,

1) 「아동복지법」 제53조(아동전용시설의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오락 시설, 교통시설, 그 밖의 서비스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이용편의를 고려한 편익설비를 갖추고 아동에 대한 입장료와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아동전용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설치 및 운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놀이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어린이가 주체적이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놀이공간 제공
2.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운영
3. 보호자의 돌봄 공백이 불가피할 경우 놀이돌봄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및 시설의 운영

제9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놀이기구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놀이기구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라 선정한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2. 놀이기구 설치 시 건물을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

- 위탁기간은 같은 조례 제9조제6항4) 규정에 의거해 추진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 됨.

라. 종합의견

- 이상을 종합해 보면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조례」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제출된 동의안이며 사무의 민간위탁 요건도 충족하고 있는 바, 본 민간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 됨.

4) 제9조(위탁운영) ⑥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수탁기관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한 후 재계약할 수 있다.